

2021년 해외진출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우리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2021년도 해외진출컨설팅 지원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사업 목적

-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바이어 발굴을 통한 신 시장 개척 및 수출활력 제고

2 모집 개요

- 지원규모 : 20개 업체 내외
- 사업기간 : 약정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희망)업체, 농가 등
 - 해외진출컨설팅은 1업체당 최대 3회까지 지원(선정)가능
 - * 수출컨설팅(현장코칭)과 중복지원 불가(당해 연도)
 - *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 지원업체는 반드시 aT수출컨설팅 풀(POOL)에 있는 컨설팅사와 매칭하여 사업신청을 해야 함.
-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수산물 제외)
- 지원내용 및 신청분야
 - 컨설팅사 - 개별기업 간 장기간(8개월 내외) 컨설팅 수행하며 업체의 현황에 따라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운영. 단, 바이어 발굴은 필수

컨설팅분야	지원대상	수행 기간	보조금 지원한도	지원비율	수출 목표액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실적 USD 50,000 미만	8개월 내외	24백만원 (인센티브 별도)	60~80% (지원 연차에 따라)	\$1만불 이상
시장다변화	전년도 수출실적 USD 50,000 이상				\$2만불 이상

□ 지원한도 : 24백만원 / 수출실적 조건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 지원비율 : (연차별)국고 60~80%, 자부담 40~20% * KPI 달성 수준에 따른 정산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기 컨설팅 동일국	80%	70%	60%
타 국가	80%	80%	80%

○ (인센티브)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KPI 수출목표액의 50% 이상을 수출할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 최대 10백만원 이내(인건비 30%이내, 기존 예산과 혼용 불가)

○ KPI 달성수준 기준

구분	가중치	KPI 목표
5만불미만 (수출초보)	80%	수출 USD : 10천불이상
	20%	고객만족도 : 100점
5만불이상 (시장다변화)	80%	수출 : USD 20천불이상
	20%	고객만족도 : 100점

- * 고객만족도 평균 60점 미만 시 해당 컨설팅사는 차년도 사업 참여불가
- * 본-지사 간 거래 금지, 핸드캐리 실적(샘플 제외) 미인정
- * 수출실적은 협약서상 명시 된, 목표국가/품목(HS CODE 기준) 수출 건만 인정
- * 기 수출국의 경우 수출이력이 있는 바이어 대상 수출실적 미인정
- * 협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이후의 수출실적만 인정

○ 세부 지원항목

지원항목	주요 내용	비고
시장조사	수출희망 목표국가에 대한 맞춤조사	컨설팅사 (기본)
실무교육	무역실무 교육(절차, 계약대금지급조건 등)	
바이어 발굴 (박람회, 상담회 등 포함)	바이어 발굴을 위한 미팅, 박람회 참가, 사업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소비자체험홍보, 마켓테스트, 모바일/온라인 마케팅 등	컨설팅사 (선택)
홍보물 제작	상품 브로슈어, 카탈로그 등 제작	
인증, 인허가, 통관	인증, 인허가, 통관 관련 검사·등록·대행 비용	

* aT 타 사업 동일항목과 중복정산 불가

□ 선정 방법

○ 서류평가(적격여부, 가점 등), 수출전문위원 신청업체 현장점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비대면 발표평가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한 공정한 지원업체(컨설팅사) 선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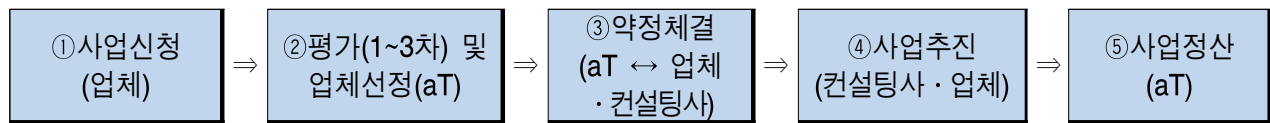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오후 6시 까지

□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 → 수출지원사업신청 → 2021년 해외진출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압축파일로 업로드)

□ 추진 절차



□ 서류제출 : 해당 서류는 압축하여 신청시스템에 업로드

-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첨부파일)
- ② 무역통계정보동의서 제출(기 제출업체 생략)
* 제출방법 : global.at.or.kr → 공지사항 → 무역통계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안내 확인
- ③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1부 / ④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⑤ 회사·제품소개 카탈로그 등 소개서 / ⑥ (가점) 해당사항 있는 업체는 관련 인증서(증명서) 제출

□ 문의처 : aT 수출전략처 기업육성부 ☎ 061-931-0864, 0866

※ 가점 (최대 5점)

- ① (2점) 농식품 국가인증마크 취득업체(유기인증, GAP, 지리적 표시, 이력추적, 전통식품, 기술품질인증 등), 우수문화상품(K-Ribbon Selection), HACCP, ISO, GMP 등 시설·품질 인증업체, 6차산업, 농식품부-중기청 지정 농공상용합기업, 할랄인증, 코셔인증 (*단, 유효기간내 인정)
- ② (3점) 여성기업,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 ③ (5점) (예비)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마을기업(행안부 지정),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지정) 국산원료 사용업체(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등), 신선농산물 수출희망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공사의 해외진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